

특허청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특허청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2호, 2020. 7. 14. 공포·시행)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개정안 중 부칙에 의한 다른 훈령 일괄 개정건임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령(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특허청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심사군(42개 부서)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군
(42개 부서)

생활용품상표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산업디자인심사팀,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부품심사과,
방송미디어심사팀,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 환경기술심사팀,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